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

【제 7 회 정기회】

- 일 시 : 2023. 9. 12.(화) 18:30
- 장 소 : 청구동주민센터 3층 패밀리카페

청구동 주민자치위원회

제 7회 청구동 주민자치위원회(정기회)

회 의 록

일 시	2023. 9. 12.(화) 18:30		장 소	청구동주민센터 3층 패밀리카페
심의안건	1. 중구 거주 경로우대자(65세 이상) 수강료 50% 감면 실시 2. 프로그램 운영방식(수료제, 접수방법) 개선 3. 자치회관 기타교실 프로그램 신설			
○ 회의내용 - 팀 장 : 지난 8월 24일 자치회관 주관부서에서 자치회관 프로그램 지원 체계 개선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였고, 감면 기준 정비 요청이 있었음. 이에 중구 거주 경로우대자 수강료 50%감면 실시하고자 함. 단, 강사 운영이 없는 헬스장을 제외하고, 감면 할인액은 전액 구비 지원 예정임. 시행시기는 10월임. - ○○○위원 : 어르신 복지에 좋은 현상임 - 사 회 자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처리 - 팀 장 : 다음 안건은 프로그램 운영방식 개선 사항임. 프로그램 수강생 고착화로 신규자 유입 개선이 필요하여 신청대기자 정원 50%이상일시 분반 및 수료제로 신규자를 유입하고자 함. 또한 현재는 기존회원 우선신청, 정원초과시 신청순으로 수강생을 선정했으나 차등없이 신규, 기존회원 동시 신청하고, 정원 초과시 1순위 중구민 신규회원, 2순위 중구민 기존회원, 3순위 타구민 신규회원, 4순위 신청순으로 하고자 함. - □□□위원 : 신규자 우선이 기존수강생에게 배움의 기회가 제한되지 않도록 수강기간 프로그램의 내용 등을 신중히 고려해야함. - △△△위원 : 수료, 분반제를 운영하게 될 경우 자치위원회의 심의가 있을 거임. - 팀 장 : 이 안건은 의결될 경우 4분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분반, 접수방법 등을 사전에 안내하고, 분반대상 프로그램이 있을 경우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 의결이 필요함. 또한, 의결 후 변경사항 관련 운영세칙 개정함. - 사 회 자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처리 - 팀 장 : 다음 안건은 자치회관 기타교실 프로그램 신설임. 1·2분기 수강생 대상 수요조사 결과 1순위 ‘악기 교실’ 개설 요청이 있었음. 22년 청구동 동네배움터 인기 강좌인 기타교실이 수강생만족도가 높았고, 추가 개설요청이 있었음. 그 당시 강사를 섭외하여 운영하고자 함. - 사 회 자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처리 - 사 회 자 : 심의를 마치며 2023년 하반기 주민자치아카데미가 9월 15일 17시에 다산동주민센터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참석대상으로는 임원 3명, 위원 7명, 총 10명임. 참고해주시기 바람. - 사 회 자 : 이상 9월 주민자치위원회 월례회의 마침				
참석위원	17명	성 명	장필기, 송재천, 허상욱, 이창순, 김선애, 이규형, 이부원, 허귀순, 김순자, 정일호, 김익환, 강대성, 이재홍, 홍춘백, 이정수, 박승일, 광금자	
불참위원	9명	성 명	장 홍, 최창규, 김영란, 김치현, 경화수, 김영천, 강우경, 유경래, 안영희	
○ 회의록 서명 - 위 원 장 장 필 기 (인) - 등 장 박 태 서 (인)				

청구동 주민자치위원회 심의 의결서

- 일 시 : 2023. 9. 12.(화) 18:30
- 장 소 : 청구동 주민센터(3층)
- 위 원 : 총 26명 중 참석 17명, 불참 9명
- 안 건

1. 중구 거주 경로우대(65세 이상) 수강료 50% 감면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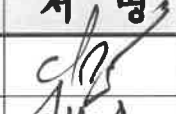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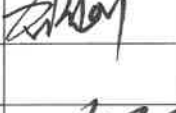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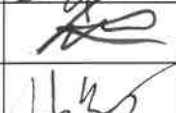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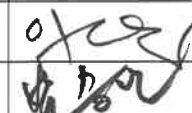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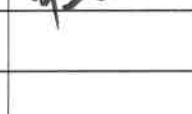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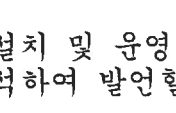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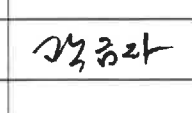
2. 프로그램 운영방식(수료제, 접수방법) 개선

※운영세칙 개정(감면 및 접수방법 개선안 반영)

3. 자치회관 기타교실 프로그램 신설

○ 심의결과 : 찬성 /반대 의결 합니다.

○ 의결서명

연번	직 위	성 명	서 명	연번	직 위	성 명	서 명
1	위원장	장필기		13	위 원	김치현	
2	부위원장	김선애		14	위 원	경화수	
3	부위원장	장 홍		15	위 원	이재홍	
4	간 사	이규형		16	위 원	홍춘백	
5	위 원	이부원		17	위 원	김영천	
6	위 원	허귀순		18	위 원	이정수	
7	위 원	김순자		19	위 원	박승일	
8	위 원	최창규		20	위 원	강우경	
9	위 원	정일호		21	위 원	유경래	
10	위 원	김익환		22	위 원	곽금자	
11	위 원	김영란		23	위 원	안영희	
12	위 원	강대성					

※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1조 제4항에 따라
고문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갖지 아니한다.